

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[]지정 []변경 요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2개월
요청자	지방자치단체명	대표자
	사업자등록번호	전화번호
	소재지	
대상지역	조성구역명	
	지정의 목적	
	위치	
	면적	
변경사항	※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.	

「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[]지정·[]변경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자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 서류	1.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: 「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적은 서류 2.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.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. 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(地籍)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								
요청서 작성·제출	→	접 수	→	검토 및 심의	→	지정 또는 변경	→	고 시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			처리기관: 해양수산부					